

World trends around packages

# 패키지를 둘러싼 세계의 동향

모리 야스마사 / (주)패키징 스트레이티지 재팬

## I. 도입

이 기사는 '포장기술'에 게재된 것으로 유럽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제안했던 포장·포장 폐기물 지령(PPWD: 2018/852지령)의 개정안 내용이다. 이는 11월 열린 유럽의회에 상정되어 새롭게 포장·포장폐기물법령(PPWR)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유럽이사회에 승인을 거쳐 그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내용이나 벌칙 등 세부 작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PPWR 개요에 대해서는 '포장기술' 4월호에 기고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본서에는 PPWR의 의의와 포장 업계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 II. PPWR의 의의

EU는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의 선진국으로, 이미 여러 규제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맹 각국의 국내법에서 독자적 규제가 제각각 행해지고 있어 규칙을 세분화해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EU의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률은 2025년 50%가 목표였으나 2022년 현시점에서 38%에 머물고 있어 그 달성이 거의 절망적이다[그림 1]. 또한 유럽환경청(EEA)에서 그린 달의 지속가능성 목표로 거론되던 도시 고형 폐기물과 포장폐기물의 리사이클 목표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은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받은 가맹국이 27개국 중 18개국이 넘는다. 사태는 심각하다. EU위원회는 이들 나라에 경고하는 동시에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도입이나 금전 측면의 지원을 표명했다.

EU 창설 이념 중 하나는 'Single Market'(단일시장)의 형성이지만 현실은 어렵다. 현상에 위기감을 가진 EU위원회는 입법화나 법수행을 각국의 제량에 맡기고 있는 현재의

지령(PPWD)뿐만 아니라 각국 국내법을 넘어 적용하는 법령(PPWR)으로 격상하여 통합된 룰을 기반으로 유럽 그린 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가맹국의 국내법을 넘어서 EU 전 가맹국의 기업이나 EU에 포장제품을 수출 판매하는 영외 기업까지 직접 적용되는 강력한 룰이 된다. 특히 플라스틱은 다른 소재에 비해 압도적으로 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향한 진보는 미미하다. EU위원회는 더욱 엄격한 룰을 기반으로 법 엄수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공표된 이후 3,000건 이상의 공공의견이 EU위원회에 도착했다. 이에 유럽 패키징 업계는 그 영향의 심각함에 직면해 찬부양론과 여러 의견을 거쳐 로비활동을 활발하게 행하고 있다.

이후 스케줄은 10월 24일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ENVI)에서 PPWR 수정안이 찬성 다수(찬성56표, 반대23표, 기권5표)로 가결되었으며 11월 20일 열린 유럽의회 의원의 전원 참가에 의해 본회의에서 심의, 재결되었다. 이후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2025년 실효화된다.

### III. PPWR의 영향

PPWR은 EU 전 가맹국과 EU 영외부터 EU시장에 포장제품을 수출, 판매하는 모든 나라의 기업에 법령 엄수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일본 EU 경제연계협정(EPA)이 체결되어 관세의 대폭 감축에 의해 무역이나 투자 등 경제 활동의 강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본도 이 새로운 과제에 조기 착수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PPWR의 많은 규제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하의 4가지는 포장제품의 EU에의 수출판매나 현지생산을 행하고 있는 일본 기업에 의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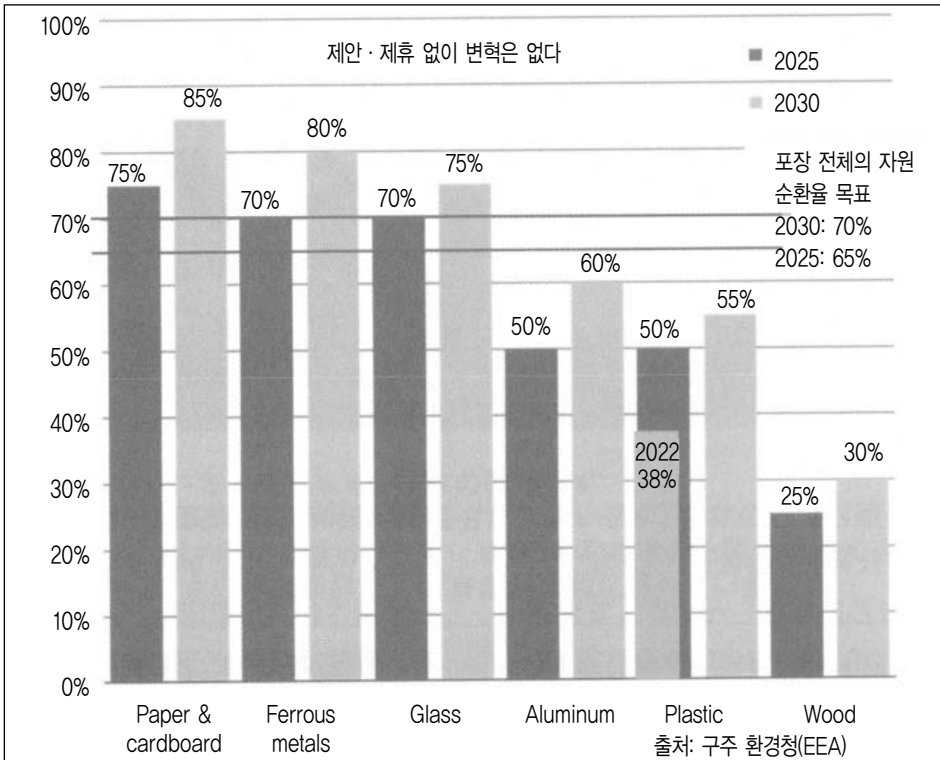
#### 1. 확대 생산자 책임(EPR)

EU시장에 포장제품을 투입, 판매하는 기업은 EU위원회와 EU가 정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등록, 보고할 의무가 있다. 사용이 끝난 패키지의 회수, 선별, 재생비용이나 소비자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 EU의 환경 부하 감축에 공헌할 것이 요구된다.

#### 2. 자원 폐기물의 회수(Collection)

EU가 정한 회수 업자와 계약하여 사용이 끝난 패키지를 회수할 의무가 있다.

[그림 1] 포장 전체의 자원 순환을 목표



### 3. 자원 폐기물의 선별(Sorting)과 정제(Purification)


EU가 정한 선별업자와 계약하여 사용이 끝난 패키지를 소재별로 선별하여 순도를 높일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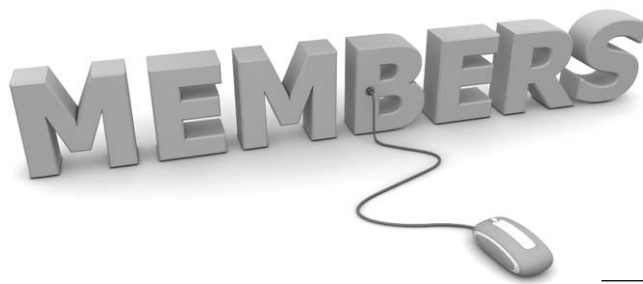
### 4. 포장폐기물의 재생(Recycling)

EU가 정한 재생업자와 계약하여 사용이 끝난 패키지를 재생하여 자원 순환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들은 EU의 포장폐기물 배출량(output)과 회수 · 재생량(input)을 종합시켜 자원 폐기물 배출을 감축하는 PPWR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이미 2019년부터 적용해 효과를 올리고 있는)독일 포장법에 준한 것이라 생각된다.

## IV. 마무리 – PPWR이 직면한 과제

EU에 도착된 공공의견 일부를 소개한다.

-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유 유래의 패키징 플라스틱은 리사이클 추진을 방해하여 리사이클 공장의 가동률을 저하시킨다. 리사이클 업자는 재생 플라스틱 창고의 산에 갇혀 에너지 비용과 운송 비용 상승으로 EU의 리사이클 산업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 심각한 것은 플라스틱 가공업계 일부는 재생 재료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저가 재료에 의존해 리사이클이나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 기업은 재생 재료에의 전환이 환경면에서도 경제성 면에서도 이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제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의 장기적인 착수를 우선해야 한다.
- 플라스틱 포장 업계의 모든 플레이어는 더욱 빈번한 협력을 통해 기후 변동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전이할 필요가 있다. 



##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